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박혜리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 3460-1029)

차 례 ● ● ●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요(개정안 기준)
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정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2년 2월 26일 무역조정지원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음.
 - 최근 한-EU FTA, 한-미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온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개정조치가 단행되었음.
- ▶ 주요 개정 내용은 1)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2)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근거 신설, 3)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정비, 4)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 보강 등임.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변경되었고, 무역조정지원 미지정기업이라 할지라도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실행기관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를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 이번 개정으로 향후 무역조정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이 증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절차의 간소화로 운영의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유사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 도덕적 해이 최소화와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제도 운영, 2) 사전 지원기능 강화, 3) 객관적인 방법론에 의한 효과 분석 및 홍보, 4)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및 정보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함.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요(개정안 기준)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정됨.

- 우리나라가 활발한 FTA 추진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FTA로 인한 피해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와 민간위원회의 의견에 제기돼 2004년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법제화 노력이 시작되었음.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관기관은 지식경제부(근로자 지원은 고용노동부)이며, 실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임.

- 지식경제부는 무역조정기업 최종 선정을 담당하고,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무역피해 판정을,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는 무역조정 종합대책, 상담 및 접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시책연계지원,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함.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요건 및 내용,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은 무역조정지원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구분되며, 무역조정지원기업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으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30% 이상 단축된 근로자로 정의됨.

◦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 전반이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현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 지원 내용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을 위한 용자, 컨설팅 등임.

◦ 무역조정지원기업

1) 용자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¹⁾과 운전자금²⁾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0.6%)로 지원

2) 경영/기술 상담지원: 무역조정전략 사업전환, 구조조정 등 부분별 경영·기술개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2,400만 원, 총 소요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3) 출자지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정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합출자금의 50% 이내에서 출자지원

◦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전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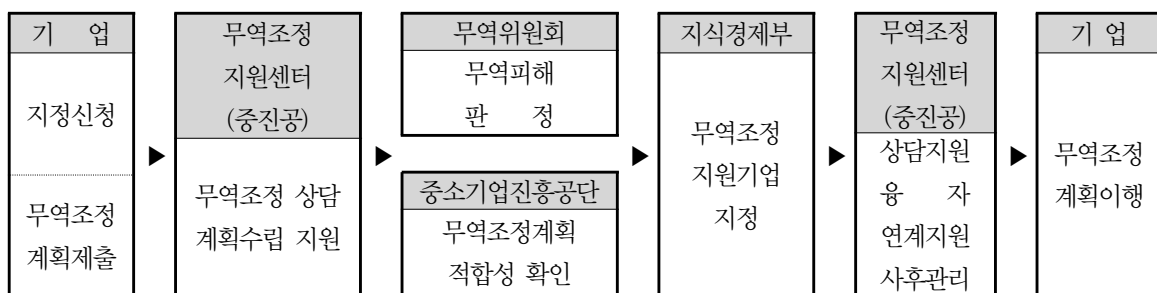
1)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비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임.

2)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하여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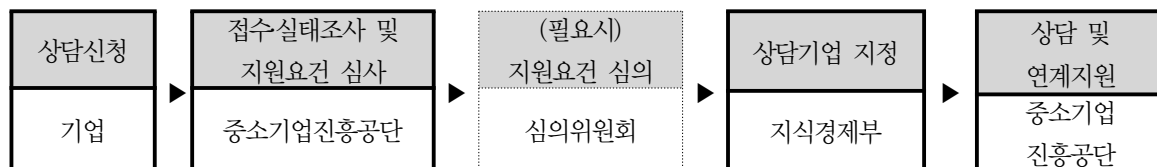
- 지원절차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가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조정 신청을 하면 무역위원회에서 무역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사후관리를 담당함.
- o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과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1월 이내 지정해야 함.

그림 1.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6개월 동안 매출 또는 생산이 10% 감소한 경우



상담지원 지원절차: 6개월 동안 매출 또는 생산이 5% 감소한 경우



자료: 무역조정지원센터.

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정

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정 논의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2006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도입되었으며, 제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음.
- 그러나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이슈화되면서 서비스 부문 지원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2007년 지원대상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하였음.
- 서비스 부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전환되었고, 이후 2008년, 2010년, 2011년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왔음.

표 1. 무역조정지원제도 추진 경과

일 시	내 용
2005. 8. 4~24	입법예고
2005. 8. 31	공청회
2005. 9. 15~10. 28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법률 심사
2006. 4. 28	국회 통과 및 법 공포
2007. 4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07. 12	지원대상 확대 및 일부사항 개정
2008. 6. 22	시행(개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0. 7. 5	시행(개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1. 9. 6	시행(개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2. 1. 17	법률 개정 및 공포
2012. 2. 26	개정 법률 시행령
2012. 7	개정 시행(예정)

자료: 무역조정지원센터.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도입 당시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음.

-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무역조정지원 실적 미미하여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이번 개정조치가 이루어진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단행됨.

- 정부는 2012년 1월 1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임.
- 올해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당사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임.

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실적 및 평가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2006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무역조정지원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 자료³⁾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무역조정대상기업으로 판정받은 기업은 총 7개이고 그 중 6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그 외 기업들은 신청을 하였으나 무역피해판정을 받지 못했거나 무역조정지원 이전에 도산하여 지원을 받지 못함.

- 기업에 지원한 총 용자금액은 17억 5천만 원, 컨설팅 비용은 6,400만 원이며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는 총 65명임.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 4건, 한·EFTA FTA 2건, 한·ASEAN FTA 1건임.

-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는 주로 와인 대체 상품인 머루주, 복분자주 업체와 돼지고기 가공기업에 발생하였으며, 한·EFTA FTA로 인한 피해는 시계, 어류 업체에서 발생하였음.

■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은 매출 또는 생산이 25%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이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용자지원이 제공되었으며, 이들 중 3개 기업에는 컨설팅 비용이 제공되었음.

- 이들 기업의 경우 모두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급증이 피해발생의 원인임이 확인된 경우이며, 무역조정지원 신청 당시의 피해발생뿐 아니라 단계적 관세철폐로 인해 향후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임. 또한 다른 시책을 통한 지원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기업 희생을 위한 유일한 지원제도인 경우임(글상자 1 참고).

표 2. 무역조정 지원 사례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생산품	수도꼭지	머루주	돼지고기 가공	시계	돼지고기 가공 및 유통	염장고등어	골프 웨어	복분자주	
지정일	-	2008.10.31	2008.12.15	-	2009.6.4	2009.11.4	2010.11.24	2010.11.24	
피해 내용	매출감소 (전년대비 27%)	매출감소 (전년대비 45%)	생산감소 (전년대비 28%)	매출감소 (전년대비 49.5%)	매출감소 (전년대비 31.6%)	매출/영업 이익 감소 (전년대비 19.5%/51%)	-	-	
상대 수입국	스위스 (한·EFTA FTA)	칠레 (한·칠레 FTA)	칠레 (한·칠레 FTA)	스위스 (한·EFTA FTA)	칠레 (한·칠레 FTA)	노르웨이 (한·EFTA FTA)	베트남 (한·ASEAN FTA)	칠레 (한·칠레 FTA)	
무역위 판정	부지정 (수출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판정	피해판정	피해판정	피해판정	피해판정	피해판정	피해판정	
지원 내용	용자 지원	-	4.5억 원 신용 대여	1억 원 신용 대여	-	1억 원 신용 대여	3억 원 신용 대여	7억 원 신용 대여	1억 원 신용 대여
	컨설팅 지원	-	1,600만 원 (마케팅 전략 수립)	B2B 영업활성화 전략수립 및 실행	-	-	1,600만 원	-	-
비고	-	-	-	정부지원 이전에 도산되어 지원을 받지 못함	-	-	-	-	

자료: 지식경제부.

3) 지식경제부(2012. 2. 27),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글상자. 1. 무역피해 판정 사례

사례 1

- (주)○○클럽은 한-ASEAN FTA 발효(2007. 6) 이후 베트남산 골프웨어 수입이 급증하여 매출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고, 무역위원회는 이에 대해 FTA로 인한 피해로 판정함.
 - 의류제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13%에서 FTA 발효로 8%로 인하되었고 세부 품목별로 2008년부터 무관세가 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8%(발효시)→5%(2008년)→3%(2009년)→0%(2010년))됨
 - 이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 수입은 피해기간(2008. 10~2009. 3) 중 전년동기대비 금액은 65.8%, 물량은 107.4% 증가하였음.
 - 베트남산 제품 수입
 - (2007. 10~2008. 3) 1,304만 8천 달러, 527,132kg → (2008. 10~2009. 3) 2,163만 9천 달러, 1,093,207kg
 -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거래 수량 및 거래규모가 모두 감소되었으며 이는 FTA로 인한 피해로 인정됨.

사례 2

- (주)○○○북분자주 흥진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레드와인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쟁관계에 있는 북분자주 업체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무역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해판정을 내림.
 - 무역위원회는 북분자주와 레드와인이 과실주로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넓게 인정하였음.
 - 한-칠레 FTA 발효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칠레산 레드와인이 전체 레드와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했고, 피해기간(2010. 1~6) 중 레드와인 수입도 10.5% 늘었음.
 - * 관세(%): (2004) 12.5 → (2005) 10 → (2006) 7.5 → (2007) 5 → (2008) 2.5 → (2009) 0
 - ** 칠레산 비중(%): (2004) 15.2→(2005) 19.8→(2006) 19.9→(2007) 23.1→(2008) 29.9→(2009) 31.7
 - 북분자주 대비 칠레산 레드와인의 평균가격도 피해기간 중 42%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기업은 주 거래처에서 수량, 금액기준 모두 거래규모가 축소되었고, 매출, 생산 등이 25% 이상 감소하였음.

자료: 지식경제부.

- 사례 분석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용 실적이 낮은 이유를 정리해 보면 1) 발효된 FTA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과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며, 2)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3) 무역조정지원제도 전반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분석됨.
 - 현재 우리나라는 총 8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 EU 등과의 FTA는 최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들 FTA로 인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은 아님.
 - 2011년 이전에는 매출 및 생산 감소가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만 지원되었는데, 이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며 25% 이상의 매출감소가 발생하면 기업이 사실상 회생하기 힘든 수준임.
 - 현재 무역조정지원사업 절차는 기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상당히 간소화되었으나 도입 초기에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제도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⁴⁾ 피해입증 책임을 여전히 신청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지원신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주요 개정내용은 1)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2)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근거 신설, 3) 1인 사업주 지원 근거 신설, 4) 무역조정지원위 정비, 5)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 보강 등이 있음.

- 먼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⁵⁾(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크게 완화됨.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담지원이 가능해짐.
 - 상담지원 요건은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피해발생 이전이라 할지라도 종업원 수,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작성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고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가 무역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 개정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지원 TAA 기준인 5%까지 인하하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10%, 무역조정지원 미지정기업에 대해서는 5%로 결정됨(글상자 2 참고).

글상자 2. 미국의 기업 TAA 자격 기준

- 미국의 기업 TAA 지원 기준: 세 가지 기준(criteria) 모두 충족해야 함.
 - 1)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상당수 또는 상당한 비중의 노동자”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해고되거나 해고 위험에 처할 경우(기업 근로자의 5% 또는 50명,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 경제발전청(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⁶⁾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가능)
 - 2)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한(decreased absolutely) 경우(또는 36개월간 총매출이나 총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경우)
 - * decreased absolutely: 최소 5% 감소해야 함
 - 3)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외국제품의 수입증가가 해고와 매출 및 생산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했을 때(contribute importantly)
- 승인기준 중 특징적인 것은 특정 무역자유화와 상관없이 수입증가가 피해에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임.
 - 반면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피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자료: 미 상무부 경제발전청.

4) 삼일회계법인(2008. 5), 「FTA에 따른 무역피해기업 정밀실태조사」.

5) 무역조정지원제도 법률에서는‘5~10%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 10%로 개정됨.

6) 미 상무부 산하 기관.

-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도 무역조정지원 근거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2007년 이후 단 1회만 개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 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위원장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변경되었음.
-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가 상담지원 신청 및 접수, 지원요건 조사 및 확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됨.

표 3. 기존 제도와 개정안 비교

	구분	2012년 개정 이전	2012년 개정 후
지원기준 완화 및 변경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 요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무역조정지원 위원회 소속 변경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소속 (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 범위	피해판정은 무역위원회 소관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역피해 판정 가능
	신청절차	작성서류 4종	작성서류 2종
신설	1인 사업주 지원	-	1인 사업주 지원 근거 신설
	상담지원 기준 완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자료: 저자 작성.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개정으로 향후 무역조정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이 증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절차의 간소화로 운영의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지원 요건이 완화(피해입증 기준의 수치적 변화)된 것은 2011년⁷⁾에 이어 두 번째이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욱 크게 완화된바, 향후에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무역조정지원 미지정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발생 초기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FTA 피해에 취약한 영세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주무부서로 이관,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 강화 등으로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 감소되어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임.

■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유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와 지원 효과의

7) 2011년 9월 개정 시 25% 감소 기준에서 20% 감소 기준으로 완화된 바 있음.

극대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제도 운영, 2) 사전 지원기능 강화, 3) 객관적인 방법론에 의한 효과 분석 및 홍보, 4)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및 정보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첫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크게 지원 기준의 완화와 피해 입증 부담의 경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원기준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피해입증에 대한 부담은 상당함.
 - 향후 지속적인 제도 손질을 통해 지원기준뿐 아니라 피해입증 부담을 경감시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단, 여전히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시키는 수준으로 지원조건 완화와 입증 부담 경감 등의 정책 수단들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할 것임.
- 둘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구조조정 저해라는 태생적인 문제점과 사전지원제도가 아닌 사후보상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무역조정 미지정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전지원제도로서의 의미가 강화됨.
 - 향후에도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또는 피해 발생 초기에 기업이 자구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예: 무역피해 입증 컨설팅 기능 도입).
- 셋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발표한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예상 효과와 실질적인 효과 간의 간극이 컸기 때문임.
 - 이번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향후 한·EU FTA나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대 보도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임.
 - 물론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대내협상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분명 있으나 그 과정에서 효과 예상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보다 신뢰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치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분석자료, 즉 투명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서는 신청절차나 운영성과에 대한 홍보 및 실적보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성과에 대한 정기 분석보고서, 또는 실적 및 사례 공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원하는 피해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정보창을 설치하여 성공 사례 공유, 실적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KIEP**